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수처의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금지〉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88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4. 11. 22.
3. 회 부 일: 2024.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의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수사처가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6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수처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u>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 제3조제1항은 공수처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공수처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외에 공소제기와 그 유지 권한까지 가지나, 그 외 고위공직자범죄등¹⁾에 관해서는 수사권만 가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카. 검찰총장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 ③ (생략)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공수처에 수사권만 인정되고 기소권은 인정되지 않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의 경우 수사를 마친 공수처 검사는 제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이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규정하는 사법경찰관의 의무와 대응되는 것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하게 공수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²⁾는 같은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현행법 제47조는 공수처 검사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를 준용하여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 기관 간 견해차가 존재함.³⁾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3)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양 기관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일부 사건의 경우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 경우가 존재함. 경향신문, “검찰·공수처 ‘핑퐁 사태’ 빚은 ‘감사원 뇌물사건’, 1년 만에 검찰서 보완수사키로”, 2024. 11. 7.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071548001>

검찰청은 공수처가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보유한 사건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와 유사하게 보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반면,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공수처의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보완수사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수처의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지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면 증거의 불충분 등으로 인해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가 불가능해지거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사실상 강제하게 되는 등,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공수처 검사에 대하여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의 경우, 충실한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의 필요성, 공수처의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지위,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 수사에 있어 공수처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수처는 수사기관 간 불필요한 견해대립을 해소하고 수사 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였고, 법무부는 공수처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사에 관한 통일적 법해석에 배치되고, 공수처의 부실수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미진한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검찰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3